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① 계약목적 : 요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00일부터 00일까지로 한다.
2.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4. 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단, 시설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이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6. 5호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급여+비급여)은 아래와 같다.

급 여		1.2.3.4등급[일반(20%) 1일 비용]		
구 분		1등급	2등급	3.4등급
요양급여비용 총액(1)+(2) _(합수)		93,070	86,340	81,540
공단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1)	74,456	69,072	65,232
본인부담비용	요양급여비용(2)	18,614	17,268	16,308
외박 시 1일비용	요양급여비용 _(합수)	9,307	8,634	8,154
※. 본인부담비용은 일반(20%), 감경(12%), 감경(8%), 기초(0%)로 구분하여 차등적용				

비급여	
항 목	상세내역
식재료비(간식비포함)	1식 3,800*3회=11,400원 30일 기준 월 342,000(30일 기준)
상급침실료	2인실 1일 5,000원
의료비 및 약제비	입소자부담
계약의사 본인부담금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

● 비용의 개정 ●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와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될 시는 비용을 개정한다.

- ② 시설은 입소자(보호자)에게 비용의 개정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고시하고 입소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4. 내역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의 관리운영●

- ① 시설은 시설장 및 기타 다른 직원을 배치하고 입소자의 일생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하도록 한다.
- ② 시설의 운영관리 내용에 대하여는 시설이 수시로 고지하는 바에 의하여 입소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 ① 시설은 입소자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미, 교양, 치료 및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설은 입소자가 요청하는 생활전반과 인간관계, 재산관리 등 각종 생활상의 문제를 상담, 조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별도의 비용을 청구한다.
- ②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 필요한 건강상담 및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절차●

- ① 입소자가 병이나 부상한 경우 또는 시설이 정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는 약물치료의 요양 또는 물리치료 등 시설 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시설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중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원인수인의 책임 하에 시설의 지정병원 또는 각자의 선택에 의한 기타 의료센터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② 입소자의 치료를 위한 병원이용 및 기타 의료센터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 식 사 ●

시설은 최대한의 직원을 배치하여 1일 3식과 1일 1회의 간식을 입소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특별식 (당뇨식, 저염식, 유동식)을 조리 제공한다.

5.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규칙을 정하고 관리를 하며 입소어르신은 이를 준수한다.

● 거실의 출입 ●

- ① 시설은 수선, 보전, 위생, 방법,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입소자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② 시설은 입소자가 1개월 이상 부재일 경우 및 입소자의 건강, 재해 상의 긴급 시에는 입소자의 양해를 얻지 않고 언제나 거실 내에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장기간 부재 ●

입소자가 거실에 10일 이상에 걸쳐서 외박할 경우가 발생할 시는 입소자는 시설에 미리 그에 관한 사정을 제출함과 동시에 그 거실의 보전,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시설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원상 회복의 의무 ●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입소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또는 대리인)와 합의하여 처리한다.

● 시설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입소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시설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2. 부지 내의 공작을 하려고 할 때
3. 부지 내에 있어서 전동차를 보유하려고 할 때
4. 이 계약 이외에 제3자를 동거케 하려고 할 때
5.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6. 입소자가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 사용상의 주의 ●

입소자는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 용도의 제한 ●

- ① 입소자는 그 침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② 입소자는 공용부분을 시설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동물 사육의 금지 ●

입소자는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작은 새 및 물고기 이외의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6. 계약의 해제 및 종료

● 시설의 계약해제 ●

- ①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의 각 호의 1호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월 입소비 또는 기타 입소자가 시설에게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3. 월 입소비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4. 장기 부재로 의해 이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5.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6. 입소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기타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② 입소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해 갑이 계약해제를 통고했을 때는 곧 입소실을 명도 하여야 한다.

● 입소자의 계약해지 ●

- ① 입소자는 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이 정하는 계약해지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그 해지서류에 기재된 계약 해지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 ② 입소자는 전 항의 계약해지일까지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③ 입소자가 계약 해지서류를 시설에 제출하지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입소자의 퇴거 사실을 안 일부터 기산하고 14일째 계약 해지일로 한다.

● 계약의 종료 ●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2. 시설 또는 입소자가 계약을 해지 했을 때

● 재산의 처리 ●

- ① 시설은 입소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소유물을 일반관리자의 주의 사항을 가지고 보관하며 “을”의 신원인수인에게 연락하여 일체의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은 전 항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계약종료 익일에 기산해서 14일 이내에 그 소유물을 인수하고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해야 한다. 명도기일이 지난 소유물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그 소유물 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시설에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 ③ 본 계약 상 직계 상속인이 없어 신원 인수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입소자의 잔여 소유물건을 당 시설에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키로 한다.

7.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 특별한 보호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100%를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2.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관 한다.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

다음에 해당될 때 회사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을 갖는다.

1.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면책범위 ●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직
업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입소생활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및 입소계약서에 의한다.